# 성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안
# 검 토 보 고 서

**1. 제 출 자 : 성주군수**

**2. 제정이유**

가.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성주군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를 제정하여

나. 지방재정의 투명성,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가.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,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보, 인터넷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다.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라.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
**4. 관련법령**

가. 지방재정법

나. 지방재정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의 제정 이유 및 근거는 2011. 3. 8.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방법을 “할 수 있다”는 임의 규정에서 “시행하여야 한다”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국 244개 자치단체에서 6개월 이내에 제정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제정의 배경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성주군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,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

○ 구성은 목적 등 11개 조문으로 중앙정부의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 통일된 사항이며 절차적 입법예고를 준수한 바, 그 내용의 입법가능성, 합목적성, 절차적 규정에 하자는  없다고 판단됩니다.

○ 다만, 본 조례안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의견수렴 절차에 설명회,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공감대 조성과 그 방법으로 인터넷홈페이지, 반회보, 게시판, 이장회의 등으로 최선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감사합니다.